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10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이강일 · 김문수 · 이인영
김남희 · 김남근 · 염태영
박정현 · 민병덕 · 박홍배
김용만 · 박상혁 · 김현정
임미애 · 강준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신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 및 주차공간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주차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5(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u> <u>구축·운영 등) ① 특별시장·</u> <u>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u> <u>청장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u> <u>용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u> <u>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 및 주</u> <u>차공간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u> <u>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u> <u>“공유주차정보시스템”이라 한</u> <u>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u> <u>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u> <u>대하여 공유주차정보시스템의</u> <u>구축·운영에 필요한 주차설비</u> <u>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u> <u>를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주차공간을 공유</u> <u>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u> <u>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u> <u>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u> <u>유주차정보시스템의 구축·운</u> <u>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u>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	---